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507-8-1801
건명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뢰인	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0 유림프라자 802호 (삼산동 462-4)

대표전화 : 032-528-8811 FAX : 0505-182-3232



대 상 물 건 현 황

건 명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신 군)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 사 장

신 군
서 의 종

(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의일천육백만원정 (₩216,000,000.-)						
의뢰인	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감정평가목적	구매		
제출처	광명새마을금고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 건축물대장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07. 22	2025. 07. 22	2025. 07. 2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216,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16,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 하우스 제2동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404-20			1층	144.9			
				2층	146.52			
				3층	144.9			
				4층	144.9			
				옥탑1층	12.15			
	"	133-56	대	계획관리지역	582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1호	66.78	66.78	216,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72.6525㎡)
				1.소유권	72.75			
				대지권	582 x---- 582	72.75		
	합 계						₩216,000,000.-	
				이 하	여 백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지 리 적 위 치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북고양설문 T.G"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 주위환경은 유사형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변여건은 보통입니다.
교 통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보통입니다.
접 면 도 로	본건 동측으로 폭 세로변에 접합니다.
지세 및 형상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평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상지석동 133-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타일붙임 및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PVC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가) : 다세대주택(방4,거실,주방,화장실겸욕실2,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일련번호(가) : 전기, 위생 · 급배수 · 급탕설비, 냉.난방설비, 주차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임 대 관 계	후면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참조.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북고양설문 T.G”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7월 22일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7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 대상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등기 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상 구조가 독립되어 있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구분소유 물건입니다.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일 당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관계 미상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1. 부동산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건 물 명	타임하우스 2동	
주	용	도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2016.12.15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 수	지상 4층	
동		수	1동			세 대 수 (호 수)	8세대	
일련 번호	동·층·호	용 도 위 치	전유면적 (㎡)	공용면적 ¹⁾ (㎡)	전유+공용 (㎡)	전 용 률 (%)	대지권면적 (㎡)	
가	2동 제4층 제401호	다세대주택 -	66.78	5.8725	72.6525	91.92	72.75	

■ 공법상 제한사항

상지석동 133-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 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2.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2.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만 포함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 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ㄱ	상지석동 992-16	순환 펠리체 제4층 제401호	다세대주택 -	57.795	2024.05.23 2015.11.02	220,000,000	3,806,557
ㄴ	상지석동 133-22	106동 제302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59.92	2022.09.26 2014.08.08	190,000,000	3,170,894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 치	전유면적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a	상지석동 989	락플러스빌 A동 제2층 제201호	다세대주택 -	44.7	2024.02.28 2014.07.04	경매	172,000,000	3,847,874
b	상지석동 557-18	아띠당스 제1층 제101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7.96	2024.10.18 2017.08.30	경매	260,000,000	3,825,779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가격수준(원/전유㎡)	비 고
타임하우스 제2동내	다세대주택	4	-	3,200,000 ~ 3,300,000	본건 유사

[출처: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1.1. 거래사례 선정

1.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1.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 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가	ㄱ	상지석동 992-16	순환 펠리체 제4층 제401호	다세대주택 -	57.795	2024.05.23 2015.11.02	220,000,000	3,806,55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1.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1.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일련 번호	지 역	유 형	적용 통계지수
가	경기 경의권	연립다세대	2024.05.2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4월) : 100.9 2025.07.2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6월) : 99.7

1.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 호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ㄱ	2024.05.23 ~ 2025.07.22	시점수정치 : $99.7 \div 100.9 = 0.98811$	0.988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1.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주거용]

항 목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세 부 목	대중교통의 편의성	시공업체의 브랜드	층별 효용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시설 등의 배치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향별 효용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의 배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차량이용의 편리성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단지 내 면적구성	내부 평면방식(베이)	
	자연환경 (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 통로구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1.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	ㄱ	0.86	1.00	1.00	1.00	0.860
		대상물건은 거래사례대비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5.1. 적용단가

[적용단가: 원 미만 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4층 제401호	3,806,557	1.000	0.98811	0.860	3,234,715

1.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 유효숫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4층 제401호	3,234,715	66.78	21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구분건물	216,000,000
합 계	216,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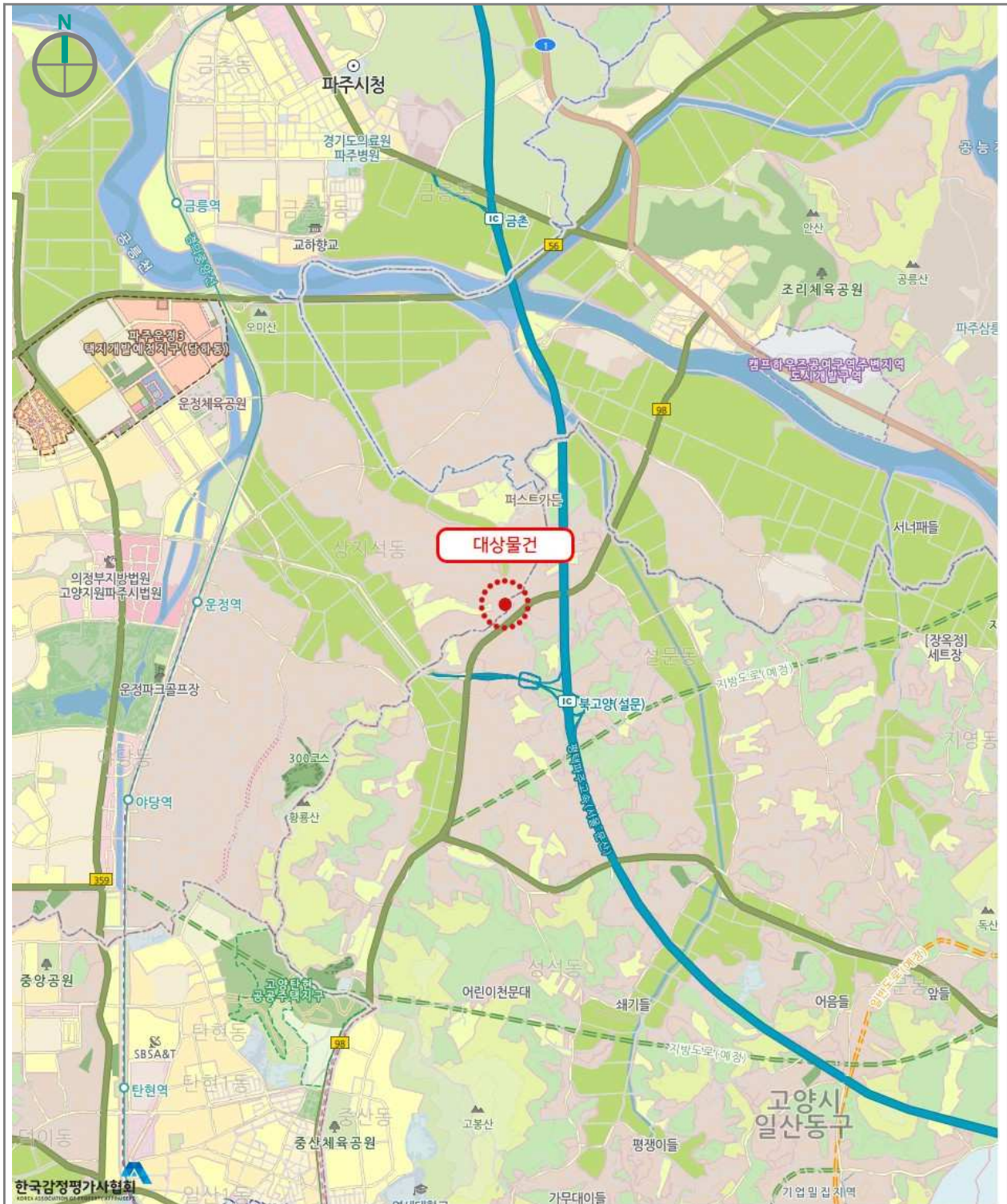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216,000,000
합 계	216,000,000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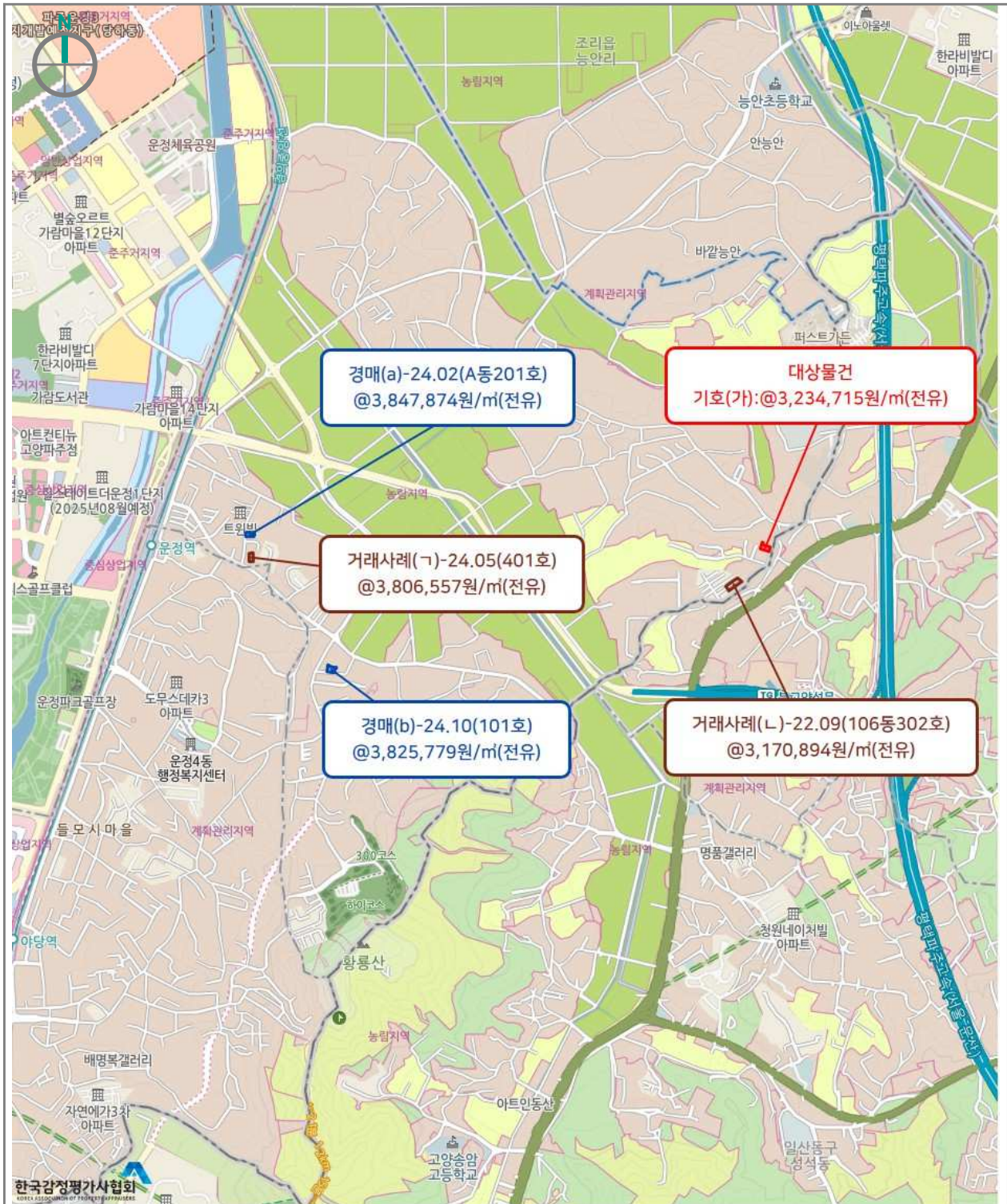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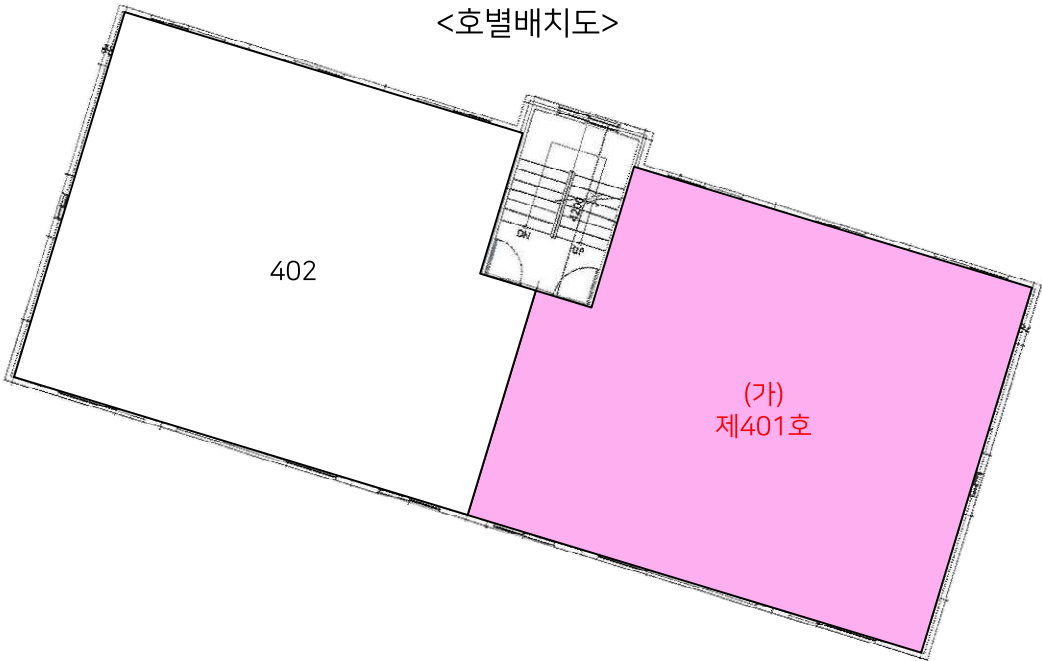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건물개향도 S = NONE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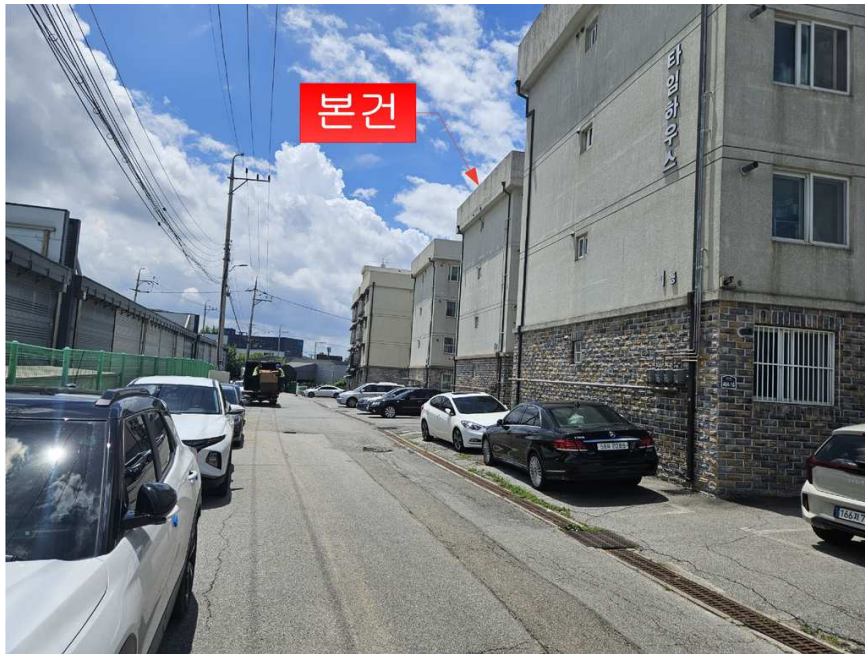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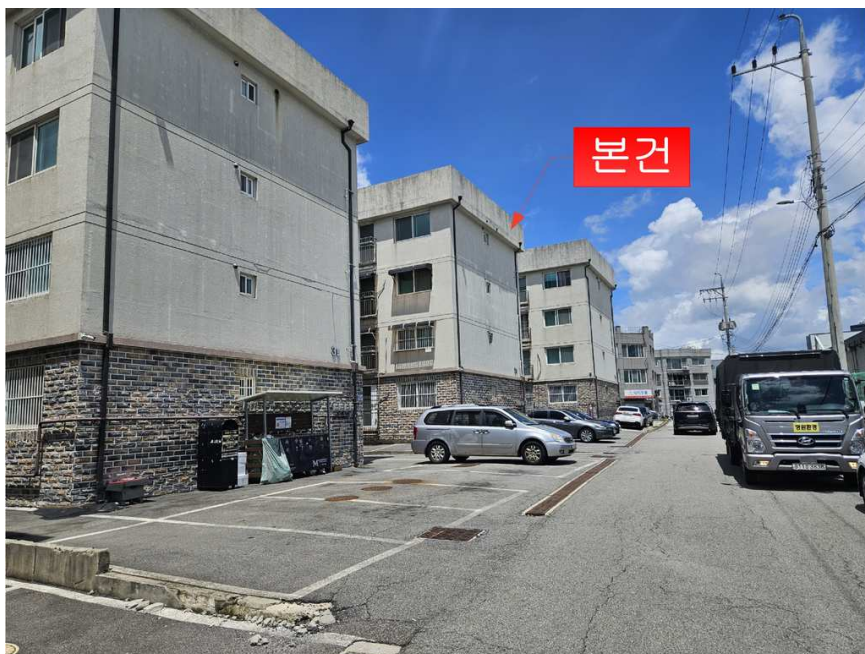


<대상물건 :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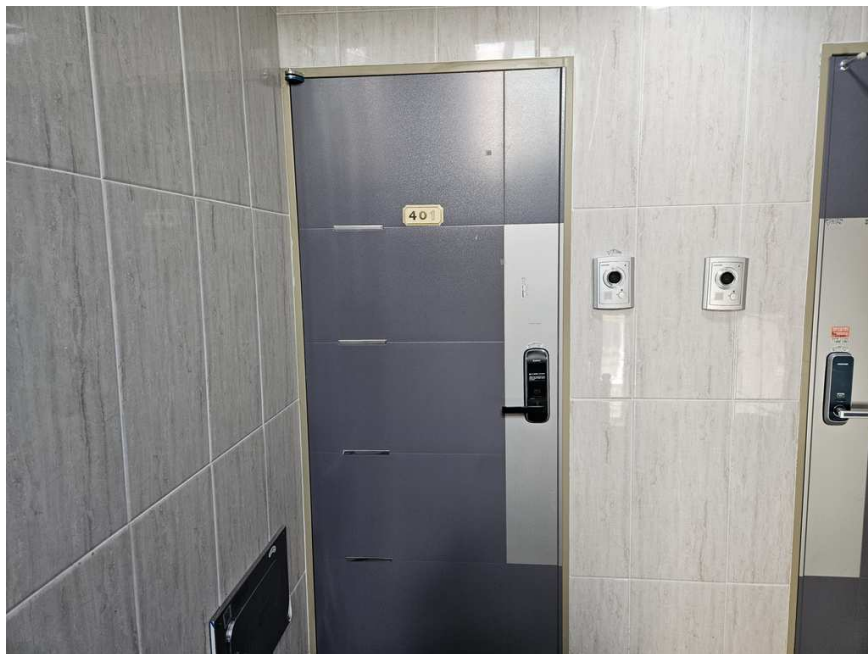


[본건 주위환경(북동측에서 촬영)사진]



[본건 주위환경(남동측에서 촬영)사진]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외부사진]



[일련번호(가),내부사진]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내부사진]



[일련번호(가),내부사진]

(주) 태 평 양 감 정 평 가 법 인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0 유림프라자 802호 (삼산동 462-4)

☎032-528-8811 FAX.0505-182-3232

문서번호 : 태평양 D42507-8-1801호

시행일자 : 2025. 07. 22

수 신 : 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참 조 : 대부계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저희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금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7.18자로 의뢰하신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정평가서
2. 청구서

1 부

1 부 끝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 사 장 서 의 종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 번호 : 태평양 042507-8-1801호

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귀하



금오십육만이천일백원整 (₩562,100.-)

1. 2025-07-18 일자 귀 제 『 - 』 호로 의뢰하신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타임하우스 제2동 제4층 제401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396,080	하한율 적용(0.8) $250,000 + (166,000,000 \times 11/10,000 \times 0.8) \approx 396,080$ 원
실 비	여 비	97,000	
	물 건 조 사 비	10,000	
	공 부 발 급 비	2,200	
	기 타 실 비	6,000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115,200	
합 계(공급가액)		511,000	* 1,000원미만절사
부 가 가 치 세(세액)		51,100	
총 계		562,1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562,100	

- ※ 수수료는 아래의 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 바라오며 입금자명은 의뢰문서번호 또는 감정서번호(042507-8-18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주시시오.
연락이 안될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겠습니다.

★ 계좌번호 ★ - 예금주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

◆ 새마을금고-부평중앙새마을금고 : 9005-0002-5282-4

2025. 07. 22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공급자(사업자) 등록번호 : 130-85-31155]

지사장 서의종

(TEL. : 032-528-8811 FAX. : 0505-182-3232)





문서확인번호: 1752-8139-8789-4112

발급번호 : 202541480014675552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7/ 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133-56	대	582.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 성장관리계획구역 ☐ 준보전산지 ☒ 계획관리지역 ☐ 법정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07/ 18 경기도 파주시장					축척 1/1100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541480014675552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25/ 07/ 18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